

보도 일시 (인터넷) 2022. 9. 4.(일) 09:00 (지 면) 2022. 9. 5.(월) 초간	배포 일시 2022. 9. 2.(금) 15:00
담당 부서 학교혁신지원실 고교교육혁신과	책임자 과 장 권지영 (044-203-6276) 담당자 사무관 강 현 (044-203-6894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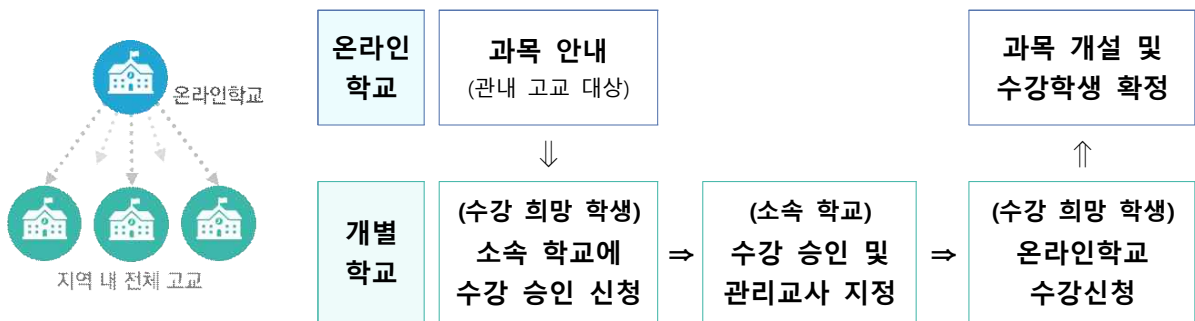
고교 단계 다양한 수업을 지원하는 온라인학교 신설 추진

- 2023년 공립 온라인학교 시범운영 교육청 선정 -

주요 내용

- 고등학생에게 다양한 과목을 시간제 수업으로 제공하는 온라인학교 도입
 - 교사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운영, 학생은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학교에서 이수
 - 4개 교육청을 선정하여 2023년 시범운영 추진, 연차적 확대 예정
-
- **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원하는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을 제공하는 온라인학교가 신설된다.**
 - ※ (국정과제 82)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"(가칭)온라인고교 신설 추진"
 - 온라인학교는 교실,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 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로,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중심으로 운영하며, 고등학생들은 필요한 과목을 온라인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다.
 - 교육부는 2023년 공립 온라인학교 시범운영을 위해 4개 교육청을 선정하였으며, 해당 교육청은 학교 신설 준비를 거쳐 2023년부터 교육과정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.
 - ※ 2023년 공립 온라인학교 시범운영 교육청 : 대구, 인천, 광주, 경남
 - 아울러,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립 온라인학교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구축해갈 예정이다.
 -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도입이 추진되면서 학생 개인의 진로를 고려한 과목 선택이 이루어지는 등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이 안착되어 가고 있으나, 한편으로는 학교의 과목 개설 부담, 학교 여건에 따른 교육과정 차이에 대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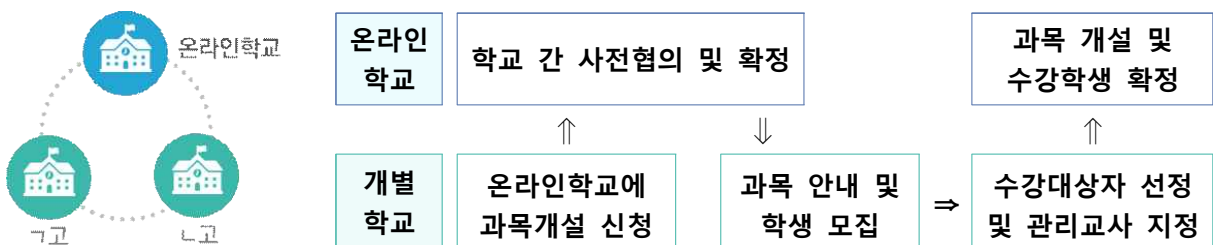
- 온라인학교는 수업 공유를 통해 개별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이 필요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개별 고등학교의 과목 개설 부담을 완화하여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키는 기제가 될 것이다.
- 온라인학교는 소인수 과목, 신산업 신기술 분야 과목 등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운영하거나,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과목 개설을 지원하여 고교단계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보완한다.
- 개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소속 학교에 원하는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온라인학교에서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.



< 온라인학교 도입 이후 예상사례-① >

고등학생 ㉠양은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이 많아 학교에 관련 과목 개설을 요청했으나, 수업을 희망하는 학생이 적어 과목이 개설되지 못했다. 그런데 선생님을 통해 온라인학교에 “인공지능 기초” 과목이 개설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. 이에 ㉠양은 먼저 소속 학교에서 온라인학교 “인공지능 기초” 과목 수강 승인을 받은 다음, 온라인학교에 해당 과목 수강을 신청하였다. 매주 2시간씩 온라인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는데, 내용이 생소해서 조금 어려울 때도 있지만 실시간으로 선생님께 질문할 수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참여하고 있다.

- 또한 개별 고등학교는 개설이 어려운 과목이 있을 경우, 온라인학교에 의뢰하여 과목을 개설할 수도 있다.



< 온라인학교 도입 이후 예상사례-② >

△△읍에 위치한 소규모학교인 ⊕고등학교는 전교생이 51명에 불과하다. 규모가 작고 강사를 구하기도 어려워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. 그런데 온라인학교와 협의하여 다음 학기에는 선택과목을 2개 더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. 인근 시에 위치한 다른 소규모학교와 공동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데, 학기 중 세 번 정도는 온라인학교에 모여서 대면(오프라인) 수업도 진행할 계획이다.

- 온라인학교 수업은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으로 이루어지며, 이외에도 대면(오프라인) 수업, 비대면·대면(온·오프라인) 혼합 수업 등이 과목의 특성, 운영 여건 등에 맞춰 다양하게 진행된다.
 - 과목 개설 및 운영, 평가기록 등 기본적인 운영 방식은 공동교육과정 기준을 준용하며,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수업 방식(가상공간 수업, 교과융합, 프로젝트 수업 등)을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.
 - 정규교원이 배치되어 전임 또는 순회근무를 실시하거나 과목 분야에 따라 외부강사도 활용하며, 원활한 원격수업 및 디지털 기반의 혁신적 수업 운영을 위해 지역 내 폐교 등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강의실과 기반 시설(인프라)을 구축할 예정이다.
- 교육부는 온라인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과 관련 지침 정비 등을 추진하고,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신설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.
-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“온라인학교는 개별학교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보완하여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보다 밀착 지원하는 시도이다.”라고 말하며,
 - “온라인학교가 미래 인재양성을 선도하고 지역의 교육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방형 교육체제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극 추진해가겠다.”라고 밝혔다.

【붙임1】 공립 온라인학교 시범운영 추진계획

【붙임2】 온라인학교 개념

고교단계 다양한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는
공립 온라인학교 시범운영 추진계획

교육부

(고교교육혁신과)

I. 추진 배경

□ 예측할 수 없는 미래, 새로운 교육체제 모색

- 급격하고 예측이 어려운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하여 어떠한 환경에서도 스스로 삶을 주도하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새로운 교육체제 모색 필요
-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체제를 지향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구현을 통해 공교육의 변화를 촉발 중이나,
 - 학교 고유의 자원만으로는 학생 개인별 교육과정 운영에 한계가 있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 기반 요구 증대

□ 교육격차 극복을 위한 개방형 교육 모델 필요

-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개별학교의 인력·자원 감축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
 - 특히 지방 위주의 소규모학교 증가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켜 지방의 인구유출을 더욱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
- 개별학교 및 지역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교육 협력 체제 구축이 시급

□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교수학습 구현

- 팬데믹을 계기로 원격교육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온-오프라인 연계 수업 등 새로운 방식의 수업이 본격 활성화
- 그간의 원격수업 경험을 기회로 전환하여 개인 맞춤형 학습과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혁신 도모

◆ 지역·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**온라인학교** 신설 추진 (국정과제 82)

Ⅱ. 공립 온라인학교 운영 방안(안)

1

운영 개요

- (개념) 고등학교 학생에게 시간제 수업을 개방 운영하여 학점 이수가 인정되는 학교
- (설립 유형) 학점인정 공립 각종학교
 - ※ 학적 관리 및 졸업학력 인정은 학생이 재학 중인 원 소속교에서 이루어짐
- (기능) 농어촌·소규모학교 과목 운영 지원, 신산업·신기술 분야 등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 및 보충·심화과정 운영 등

2

교육과정 편성·운영

- (운영 과목)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보통·전문교과 및 고시 외 과목
- (운영 대상)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
 - ※ 단, 시·도교육청 간 협약 시, 타 시·도교육청 소속 고등학생 대상 운영 가능
- (수업 방법)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 및 오프라인 수업*
 - * 온라인학교 내 구축된 교실을 활용하거나, 참여학교 공간, 지역기관 학습장 등 활용
 - 수업 내용 및 여건, 학생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의 온-오프라인 블렌디드 수업 운영 활성화
- (교수·학습) 일반적인 수업과 함께 가상공간 활용 수업, 플립러닝, 토론 및 프로젝트 수업 등 과목 특성에 맞는 혁신적 수업 운영
- (수업 운영 및 평가) 현행 공동교육과정 운영 방식 준용

< 공동교육과정 시도 공통 운영기준('22.2.) 주요 내용 >

- ▲ (학기당 최대 수강 단위 수) 학생 1인당 정규 수업시간 외 개설 강좌는 학기당 최대 6단위 내에서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름
- ▲ (수업 운영) 과목별 수업 계획에 따라 운영, 수업 일정 변경 시 학생들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하여 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변경사항 안내
- ▲ (평가) 거점학교 평가계획에 따라 지필평가는 동일 일시·장소 실시, 부득이한 경우 절차에 따라 시험장 분리 시행 가능 / 수행평가는 수행 과정 및 결과를 교사가 관찰하여 평가

※ 공동교육과정은 과목별 성적 산출방식 적용. 단, 석차등급 미산출 (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)

- (세부 운영 기준) 최소·최대 수강 인원, 수강신청 및 변경(철회) 기간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학칙으로 규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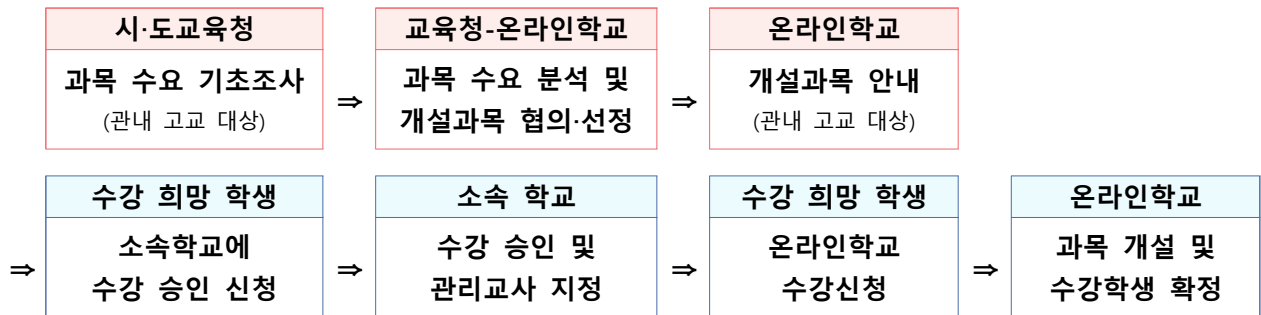
※ '23년 시범운영을 통해 온라인학교 학칙 표준안 마련 검토

3 운영 유형 및 절차

- (I 코스) 학생 개방형 교육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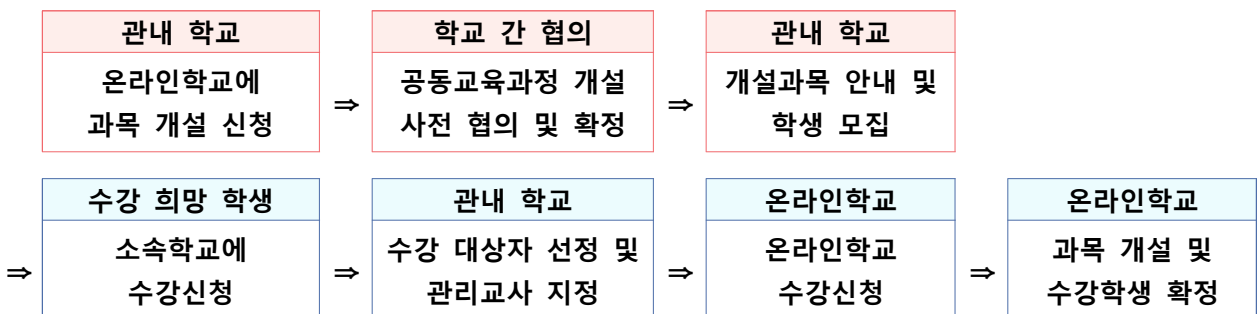
- 소속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과목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이 소속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온라인학교 수강신청 및 과목 이수
- 학교장은 학생이 해당 과목을 수강할 요건*을 갖추었는지 판단하여 온라인학교 과목 이수 승인 여부 결정

* 과목 위계 및 수준의 적절성, 수업 참여도 등 (추후 과목 승인 요건 구체화 예정)



- (II 코스) 주문형 공동교육과정

- 관내 고등학교에서 온라인학교에 공동교육과정 개설 의뢰(복수 학교 공동 신청 가능), 학교 간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목 개설 검토
- 관내 학교는 수강신청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해당 과목에 대한 관리교사 지정 후 온라인학교에 과목 운영 정보 제출



4

교직원 및 시설

□ 교직원 배치·운영

- (교장·교감) 온라인학교 교무를 통할하기 위한 교장·교감 배치
- (교사) 지역 내 과목 수요 등을 토대로 시도교육청이 정한 배치 기준에 따라 정규교원 배치
 - 전임 교원은 과목 수요 분석 및 개설, 공동교육과정 운영, 다과목 지도 등을 위해 교육감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정 수업시수 운영
 - 탄력적인 교원 운용을 위해 필요시 겸임교원 순회근무 배치, 관내 학교 소속 교원의 겸임 형태 온라인학교 수업 운영 허용
- (강사) 희소분야, 신산업·신기술 분야 등 교원 확보가 어려운 과목의 경우 외부 강사 및 산학겸임교사 등 적극 활용
 - ※ '23년 온라인학교 시범운영을 통해 적정 비율 검토 예정
 - 외부 전문가의 고등학생 대상 수업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제고를 위해 사전 연수 수료 후 수업 배치 추진
 - ※ 학교 밖 전문가 원격교육 콘텐츠 제작 중('23.2월 완료 예정)
- (직원) 불특정 관내 학교·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원격수업이 다수 개설되는 온라인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원 조직 구성
 - 교육감 소속 행정직 또는 교육전문직, 기술지원 인력 배치

< 온라인학교 운영 지원팀 구성 예시 >

교육과정 지원팀	기술지원팀	행정지원팀
- 관내 과목수요 분석 - 학교 간 과목 개설 협의 - 관내 학교·학생 문의 응대	- 원격수업 시스템 운영 지원 - 원격수업 시설 관리	- 학교 행정 관리 - 예산 및 계약 등

□ 시설

- (학교 공간) 시도별 유휴 시설을 활용하여 교실, 교무실·행정실 등 기본적인 학교 공간 마련
- (교실·인프라) 원활한 원격 수업 운영 및 디지털 기반 혁신적 수업 모델 개발을 위해 원격교육 설비·인프라를 갖춘 강의실 구성

Ⅲ. 공립 온라인학교 시범운영 추진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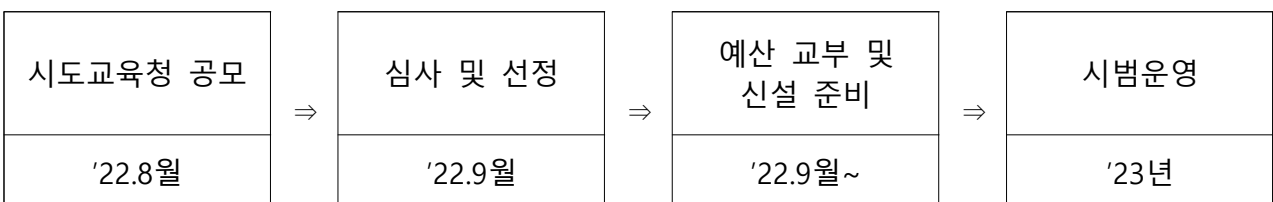
□ 기본 방향

-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학생 맞춤형 고교교육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시도 단위 공립 온라인학교 신설 및 운영 지원
-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에 맞춰 미래 인재양성을 선도하고 지역의 교육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방형 교육 모델 육성
-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(AI) 등 디지털 기술과 교과융합·프로젝트 수업 등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을 결합한 수업 혁신 모형 개발

□ 2022년 사업 개요

- (지원 규모) 4개교, 학교 운영 준비를 거쳐 '23년 시범운영
 ※ 연차별로 온라인학교 신설 지속 추진 예정
- (지원 예산) 특별교부금 총 60억 (교당 15억)
 ※ 시도교육청은 학교 공간 구축(리모델링 등) 및 교육과정 운영 등 공립 각종학교 신설·운영을 위한 자체 예산 편성 필요
- (추진 내용) 학교 신설 준비 및 공간·인력 확충, 학교 운영 모델 개발 등
 * 학교조직 및 인력 운영안, 학칙 표준안, 교육과정 편성·운영 절차 개발 등

IV. 추진일정



붙임2

온라인학교 개념

구분	고등학교	방송통신고등학교	온라인학교
유형	고등학교 (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)	고등학교 (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51조)	각종학교 (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)
기능	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	학습기회 보장	고등학생 학습권 보장
대상	중학교 졸업생 또는 졸업학력을 갖춘 사람	학령기 학습기회를 놓친 성인 및 청소년	개별 고등학교 재학생
수업	대면수업	대면수업(연간 20일 이상) 및 비실시간 원격수업	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또는 대면수업
평가·기록	학교생활기록 작성·관리	학교생활기록 작성·관리	원적교에서 학교생활기록 작성·관리
학력인정	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	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	학력 미인정 (원적교에서 졸업)